

공시송달공고

상·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납부독촉 안내문, 정수예고 및 체납 처분(압류)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제목 : 상·하수도 체납요금 납부독촉 및 압류(정수)예고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고대상 : 문*영 등 6명(공시송달 내역 참조)
4. 공고기간 : 2019. 11. 28. ~ 2019. 12. 11.(14일간)
5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6. 공고내용

- 가.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,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고양시수도급수조례」 제47조에 의거 정수처분 및 같은 조례 제55조(지방세 징수예의 준용)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일산요금팀(031-8075-4460 ~ 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28.

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장

